



이전가격 공유 시리즈

제 2 회 :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재고

2020년 06월 19일

저희 이전가격 시리즈는 아래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1. Covid-19 로 인한 공급사슬 붕괴 : 기존 기업의 공급망의 영구적인 변화 및 그에 따른 부차적 위험을 고려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보내드린 시리즈 참조)
2. Covid-19 이전의 그룹사간의 가격 정책이 더이상 적용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새로운 가격정책의 필요성
3.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 또는 변동하는 수익성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4. 이전가격 전문가의 관점에서의 사업 구조 조정
5. Covid-19로 인해 저위험 기업들은 오히려 위험이 낮아지는 가?
6. Covid-19 가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협상 및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
7. 이전가격 세무조사 추세: 납세자를 위한 완화된 접근 혹은 국가예산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접근계획

배경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베트남 이전가격("TP") 규정은 다국적 그룹사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발생하였고 해당 거래의 정상가격 범위 (arm's length principle)에 대해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당국은 Covid-19 이전에도 세무조사나 TP조사에서 거래의 형식과 실질의 대한 이익제기가 증가하였고, 사전 가격과 사후 결과의 차이에 대한 많은 TP 조정 및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 문서에 대한 요구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시리즈 제1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해 기존 다국적 그룹사의 공급망이 붕괴되어 특수관계자 간의 새로운 거래구조 수립이 시급하고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딜로이트는 베트남에서의 이전가격 실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딜로이트는 본 공유 시리즈가 베트남의 CEO 및 CFO 가 본사와 논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딜로이트의 관찰 및 제안

근거서류 보유

일반적으로 현지 납세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보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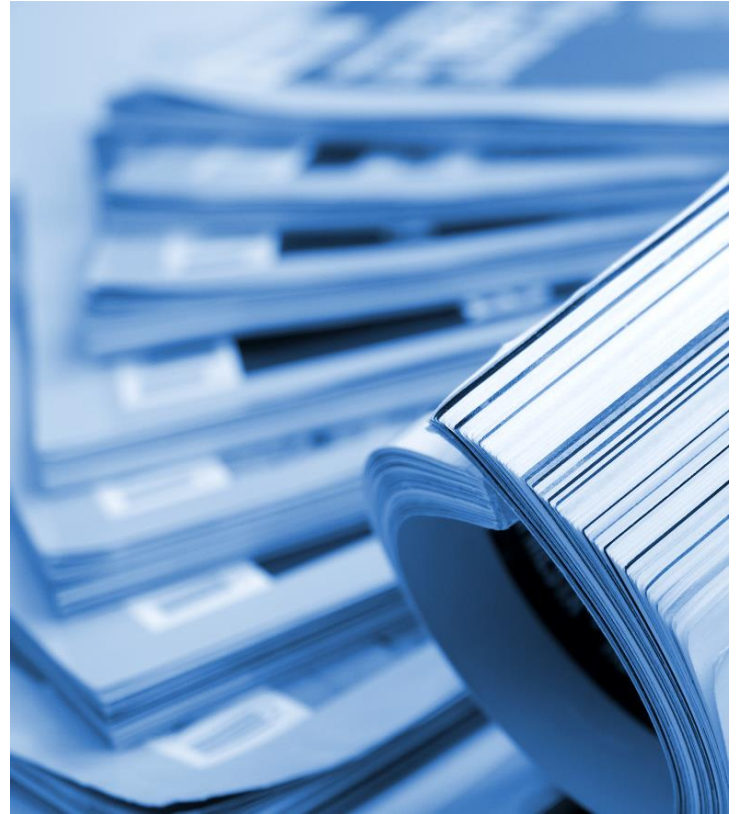
-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구입한 제품/상품의 필요성
-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서비스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익
- 비용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며 다국적 그룹 내의 거래에 일관되게 적용됨

종합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업체의 거래의 수행능력 규모, 자산 등과 같은 거래의 실재성을 증명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CEO와 CFO는 Covid-19의 유행 상황에서 이전가격 관점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룹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재고

대부분의 베트남 FDI 기업들은 다국적 그룹사의 자회사이며 부담하는 리스크가 제한적인 회사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제한된 회사는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Covid-19의 전염병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예측하지 못한 요인에 따라 영업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제한된 회사 및 그룹사가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룹사의 각 회사들은 Covid-19 피해를 어느정도 수준 같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 거래가격 및 구조를 사전에 조정하는 접근법은 그룹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리스크가 제한된 기업들의 경우 중위값보다 낮거나 전년도의 사분위 범위보다도 낮아 질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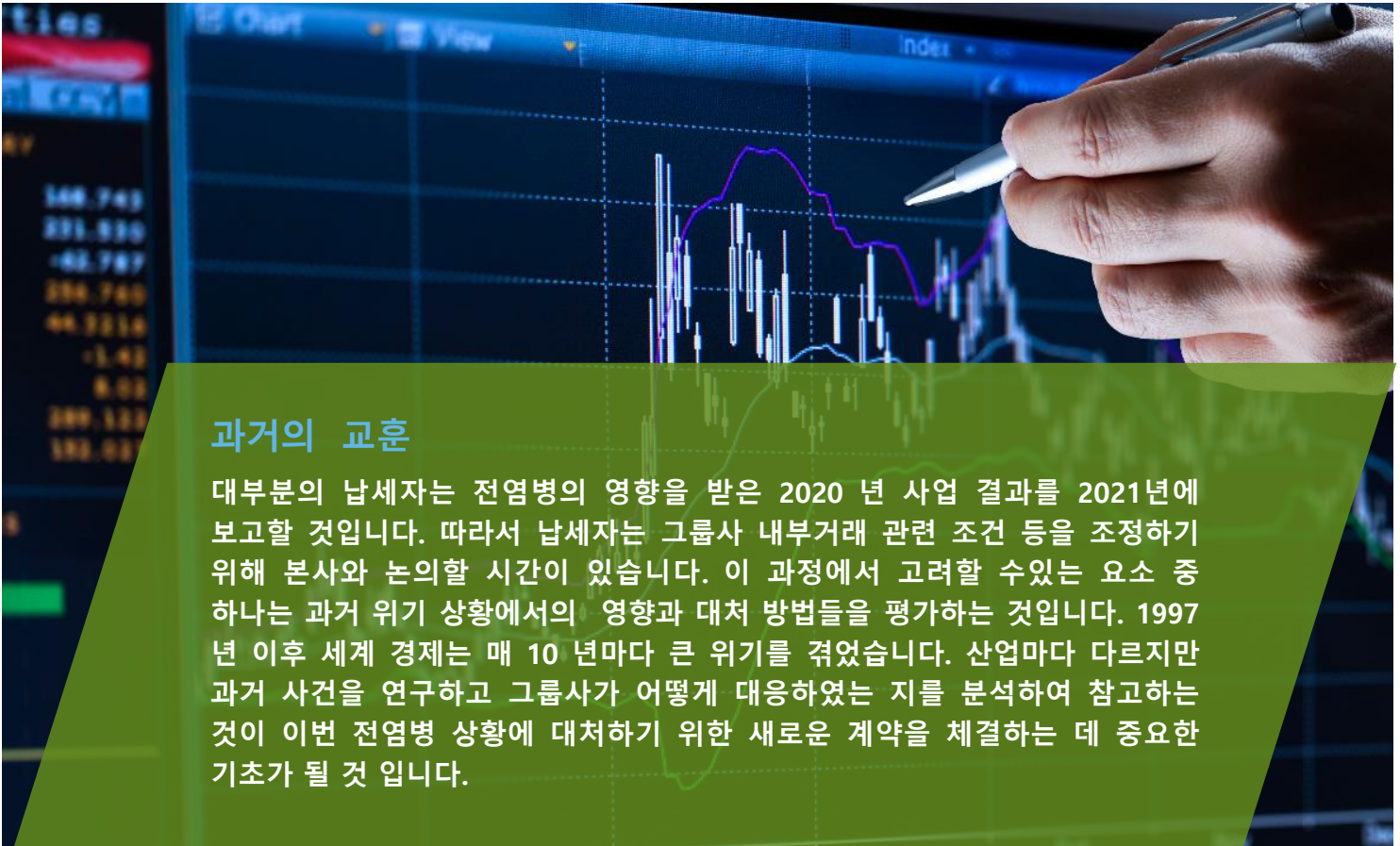


베트남에 리스크가 제한된 기업에 대한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와 같이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 요금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 효과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수료의 가격을 내리는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07년~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해 나가고 있는 2009년 McKinsey의 소비자 수요에 관한 연구(*1)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하위 브랜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패턴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랜드의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브랜드 자체는 판매자/유통 회사에게 기존만큼 많은 수입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소유자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였던 로열티는 단기간 동안이라도 조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현지 CEO와 CFO는 그룹의 글로벌 정보 교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룹사의 관점에서 베트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Note:

(*1) Betsy Bohlen, Steve Carlotti, and Liz Mihos, McKinsey & Company, "How the recession has changed US customer behavior", 01 December 2009, retrieved from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consumer-packaged-goods/our-insights/how-the-recession-has-changed-us-consumer-behavior>



과거의 교훈

대부분의 납세자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2020 년 사업 결과를 2021년에 보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룹사 내부거래 관련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본사와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과거 위기 상황에서의 영향과 대처 방법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1997 년 이후 세계 경제는 매 10 년마다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산업마다 다르지만 과거 사건을 연구하고 그룹사가 어떻게 대응하였는 지를 분석하여 참고하는 것이 이번 전염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 입니다.

불가항력 조건

독립당사자 간의 계약은 항상 불가항력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는 특수관계자와의 계약 조건을 법적 부서와 함께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지 기업은 Covid-19의 영향 (예: 외국 자재 납품 지연 등)에 대한 보상 조건을 작동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관점에서 연체 지급에 대한 벌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지 기업의 이전가격 서류에 이 모든 것을 계량화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협약으로 불확실성 관리

Covid-19 이후 예측하지 못한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납세자들은 특수관계자의 일부 유형 또는 사업 활동 결과에 대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 점 에서 정 상 가 격 산 출 방 법 사전승인(APA) 신청의 목적은 그룹사간 내부 가격 정책을 조세 당국에 보다 투명하게 만들며, 기업 및 조세 당국 모두에게 세금의 확실성을 높여주는 데 있습니다.

2013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제201/2013/TT-BTC호 시행 규칙을 발행한 이후 많은 기업은 베트남 정부에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APA) 신청 서류를 제출해 왔습니다. 조만간 신규 지침이 공표되면 베트남 정부의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제도(APA) 적용 서류 제출 제도가 기업에 안정적인 세금 상태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지 CEO 및 CFO 분들은 베트남에서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제도 (APA) 신청을 본사와의 논의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상기는 몇가지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관찰 및 추천 사항입니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존 특수관계자 거래 조건의 변경으로 이어지는 지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우려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고객사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번영의 단계로 향해 같이 함께 나아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딜로이트의 지원 :

- 이전가격 거래에 심층 분석
- 기업 내부 BEPS 계약/ 내부 거래 검토
- 이전가격문서 검토
- 이전가격 세무진단
-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APA) 전략수립, 서류 준비 및 프로세스 지원

향후 계획

다음 시리즈에서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연도의 손실 발생 또는 수익성 변화에 따른 사전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드릴 예정입니다.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Dinh Mai Hanh
National TP Lead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Nguyen Thi Khanh Ha
Tax Director
+84 28 710 14470
hatkng@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Director
+84 28 710 14341
quantat@deloitte.com



Hoang Thi Le Phuong
Tax Senior Manager
+84 28 710 14373
phuongthoang@deloitte.com



Mukherjee Supratik
Tax Senior Manager
+84 28 710 14450
supmukherjee@deloitte.com



Ha Duc Thanh
Tax Senior Manager
+84 24 710 50105
thanhha@deloitte.com



Le Na
Tax Manager
+84 24 710 50035
nale@deloitte.com



Nguyen Trung Ngan
Tax Manager
+84 24 710 50098
ngantnguyen@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